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2,6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7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077백만원이 증액된 324,094백만원, 특별회계는 16,007백만원이 감액되어 38,512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26,921백만원, 세외수입 11,441백만원, 지방교부세 157,371백만원, 조정교부금 6,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5,261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100백만원 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09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0,457백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0,957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261,047백만원(예비비 3,188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14,63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8,41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7,189백만원, 재무활동 4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275백만원 임.

Ⅲ. 예산개요

가. 회계별 예산규모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2,606,24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4%인 12,070,55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324,094,248천원으로 28,077,813천원(9.49%)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38,511,999천원으로 16,007,261천원(29.36%)이 감액 편성 되었음.

《2017년 당초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62,606,247	100.00	350,535,695	12,070,552	3.44
일	반 회 계	324,094,248	89.38	296,016,435	28,077,813	9.49
특	별 회 계	38,511,999	10.62	54,519,260	△16,007,261	△29.36
	공기업특별회계	18,513,620	5.11	26,877,243	△8,363,623	△31.1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513,620	5.11	26,877,243	△8,363,623	△31.12
	기타특별회계	19,998,379	5.52	27,642,017	△7,643,638	△27.6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2,983	0.18	751,844	△108,861	△14.4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33,000	0.28	528,000	505,000	95.6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629,515	0.17	44,571	584,944	1312.39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632,820	0.17	373,114	259,706	69.61
	수질개선특별회계	16,754,117	4.62	25,838,282	△9,084,165	△35.16
	주택사업특별회계	305,944	0.08	1,552	304,392	1961289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9%인 28,077,813천원이 증액된 324,094,248천원 임.
 - 자체수입은 38,362,135천원으로
 - 지방세수입 2,798,479천원, 세외수입 1,246,51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이전수입은 278,632,113천원으로
 - 지방교부세 5,071,000천원, 조정교부금 500,000천원 보조금 14,861,82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100,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00,000천원이 증액 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고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24,094,248	100.00	296,016,435	28,077,813	9.49	
자 체 수 입	소 계	38,362,135	11.84	34,317,146	4,035,989	11.76
	지방세수입	26,920,915	8.31	24,122,436	2,798,479	11.60
	세외수입	11,441,220	3.53	10,194,710	1,246,510	12.23
이 전 수 입	소 계	278,632,113	85.97	258,199,289	20,432,824	7.91
	지방교부세	157,371,000	48.56	152,300,000	5,071,000	3.33
	조정교부금등	6,000,000	1.85	5,500,000	500,000	9.09
	보조금	115,261,113	35.56	100,399,289	14,861,824	14.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0,000	2.19	3,500,000	3,600,000	102.86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9%인 28,077,818천원이 증액된 324,094,248천원 임.

- 정책사업비 26,905,906천원, 행정운영경비 1,625,61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453,701천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24,094,248	100.00	296,016,430	28,077,818	9.49
정 책 사 업	261,047,148	80.54	234,141,242	26,905,906	11.49
재 무 활 동	14,635,216	4.52	15,088,917	△453,701	△3.01
행정운영경비	48,411,884	14.94	46,786,271	1,625,613	3.47

○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0,566천원이 감액된 15,993,555천원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738,232천원이 감액된 8,886,888천원
- 교육분야는 170,522천원이 감액된 2,186,784천원
- 문화및관광분야는 513,289천원이 증액된 45,176,657천원
- 환경보호분야는 2,116,603천원이 증액된 20,208,040천원
- 사회복지분야는 2,271,816천원이 증액된 49,088,814천원
- 보건분야는 7,011,688천원이 증액된 12,308,629천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48,051천원이 감액된 49,016,004천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62,620천원이 증액된 4,615,399천원
- 수송및교통분야는 5,411,526천원이 증액된 15,080,701천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1,699,394천원이 증액된 49,932,541천원
- 예비비는 1,847,360천원이 감액된 3,188,352천원
- 기타분야는 1,625,613천원이 증액된 48,411,884천원으로 편성됨.

《기능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24,094,248	100.00	296,016,430	28,077,818	9.49
일반공공행정	15,993,555	4.93	16,824,121	△ 830,566	△ 4.94
공공질서및안전	8,886,888	2.74	9,625,120	△ 738,232	△ 7.67
교육	2,186,784	0.67	2,357,306	△ 170,522	△ 7.23
문화및관광	45,176,657	13.94	44,663,368	513,289	1.15
환경보호	20,208,040	6.24	18,091,437	2,116,603	11.70
사회복지	49,088,814	15.15	46,816,998	2,271,816	4.85
보건	12,308,629	3.80	5,296,941	7,011,688	132.37
농림해양수산	49,016,004	15.12	49,964,055	△ 948,051	△ 1.90
산업·중소기업	4,615,399	1.42	2,652,779	1,962,620	73.98
수송및교통	15,080,701	4.65	9,669,175	5,411,526	55.97
국토및지역개발	49,932,541	15.41	38,233,147	11,699,394	30.60
예비비	3,188,352	0.98	5,035,712	△ 1,847,360	△ 36.69
기타	48,411,884	14.94	46,786,271	1,625,613	3.47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자치행정과 48,563,579천원(14.98%)
- 주민생활지원과 46,004,795천원(14.19%)
- 안전건설과 34,621,467천원(10.68%)
- 농업기술센터 34,575,631천원(10.67%)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올림픽시설과 193.58%, 올림픽추진단 157.09%
 보건의료원 88.48%로 큰 폭으로 증액 되었으며
 재무과 △21.79%, 산림과 △21.01%, 기획감사실 △17.10%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조직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24,094,248	100.00	296,016,430	28,077,818	9.49
본 청	265,533,003	81.93	244,651,886	20,881,117	8.54
기 획 감 사 실	8,413,127	2.60	10,148,199	△1,735,072	△17.10
문 화 관 광 과	30,393,854	9.38	30,760,174	△366,320	△1.19
주민생활지원과	46,004,795	14.19	44,603,636	1,401,159	3.14
종 합 민 원 과	1,768,277	0.55	1,731,851	36,426	2.10
자 치 행 정 과	48,563,579	14.98	47,330,215	1,233,364	2.61
재 무 과	2,145,827	0.66	2,743,586	△597,759	△21.79
경 제 체 육 과	13,752,669	4.24	13,656,856	95,813	0.70
환 경 위 생 과	15,746,500	4.86	13,964,272	1,782,228	12.76
산 립 과	10,319,735	3.18	13,064,600	△2,744,865	△21.01
안 전 건 설 과	34,621,467	10.68	32,454,622	2,166,845	6.68
도 시 주 택 과	28,731,268	8.87	23,217,505	5,513,763	23.75
올림픽추진단	3,002,514	0.93	1,167,870	1,834,644	157.09
올림픽운영과	7,106,916	2.19	4,712,000	2,394,916	50.83
올림픽시설과	14,962,475	4.62	5,096,500	9,865,975	193.58
직 속 기 관	46,045,385	14.21	39,502,590	6,542,795	16.56
보 건 의 료 원	11,469,754	3.54	6,085,368	5,384,386	88.48
농업기술센터	34,575,631	10.67	33,417,222	1,158,409	3.47
의 회 사 무 과	778,116	0.24	791,483	△13,367	△1.69
상하수도사업소	5,826,853	1.80	5,244,768	582,085	11.10
읍 면	5,910,891	1.82	5,825,703	85,188	1.46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8,838천원이 증액된 41,069,686천원
- 물건비는 1,003,304천원이 증액된 25,213,543천원
- 경상이전비는 6,981,023천원이 증액된 88,332,463천원
- 자본지출은 21,596,435천원이 증액된 151,712,323천원
- 보전재원은 246,000천원이 감액된 2,570,000천원
- 내부거래는 348,422천원이 감액된 12,007,881천원
- 예비비및기타는 1,847,360천원이 감액된 3,188,352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성질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24,094,248	100.00	296,016,430	28,077,818	9.49
인 건 비	41,069,686	12.67	40,130,848	938,838	2.34
물 건 비	25,213,543	7.78	24,210,239	1,003,304	4.14
경 상 이 전	88,332,463	27.26	81,351,440	6,981,023	8.58
자 본 지 출	151,712,323	46.81	130,115,888	21,596,435	16.60
보 전 재 원	2,570,000	0.79	2,816,000	△246,000	△8.74
내 부 거 래	12,007,881	3.71	12,356,303	△348,422	△2.82
예비비및기타	3,188,352	0.98	5,035,712	△1,847,360	△36.69

다. 특별회계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8,511,99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07,261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18,513,62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63,62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19,998,37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43,638천원이 감액 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8,511,999	10.62	54,519,260	△16,007,261	△29.36
공기업특별회계		18,513,620	5.11	26,877,243	△8,363,623	△31.1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513,620	5.11	26,877,243	△8,363,623	△31.12
기타특별회계		19,998,379	5.52	27,642,017	△7,643,638	△27.6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2,983	0.18	751,844	△108,861	△14.4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33,000	0.28	528,000	505,000	95.6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29,515	0.17	44,571	584,944	1312.39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632,820	0.17	373,114	259,706	69.61
수질개선특별회계		16,754,117	4.62	25,838,282	△9,084,165	△35.16
주택사업특별회계		305,944	0.08	1,552	304,392	1961289

라. 계속비사업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20건임.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5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계	20개사업	296,481	113,944	72,706	51,583	58,248
1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1,718	700	263	300	455
2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7,418	4,400	2,218	800	
3	노람뜰 녹색자유 및 레포츠단지조성	8,800	4,200	876	2,278	1,446
4	평창송어종합 공연체험장건립	8,220	1,250	4,030	2,940	
5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3,740	0	640	400	2,700
6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	6,000	0	0	200	5,800
7	장애인복지관 건립	3,538	1,913	500	1,125	
8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16,900	4,181	2,338	3,000	7,381
9	홍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2,700	9,098	3,600	600	19,402
10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7,500	0	900	1,200	5,400
11	형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776	2,000	5,000	3,465	2,311
12	중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887	1,567	3,000	1,500	3,820
13	취약지역 개조사업	2,209		314	357	1,538
1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32,518	9,109	9,790	13,619	
15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복원	9,558	3,256	3,200	3,102	
16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34,300	27,585	2,709	2,113	1,893
17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	59,872	30,420	21,480	7,972	
18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000	1,520	357	3,021	6,102
19	평창동계올림픽관련하수도확충	23,527	12,465	11,062		
20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4,300	280	429	3,591	

마. 주요사업현황(5억원 이상)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 계	113개사업	196,299,158	
문화관광과 (16)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	875,000	국고보조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800,000	국고보조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2,625,000	국고보조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1,400,000	국고보조
	평창문화원건립	1,050,000	국고보조
	달빛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34,000	국고보조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조성사업	600,000	자체
	(구)봉평중고등학교 매입	1,162,163	자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환경 개선사업	1,800,000	국고보조
	따미공원 부지매입	1,200,000	자체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1,736,000	국고보조
	평창윈터페스티벌 행사 운영	1,000,000	국고보조
	민물고기생태관·백룡동굴 가이드 민간위탁금	590,000	자체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사업	2,277,600	국고보조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1,140,000	국고보조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2,940,000	국고보조
주민생활 지원과 (15)	국가유공자 영예수당 지원	756,000	자체
	장애인 연금지원	923,000	국고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817,894	국고보조
	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652,820	도비보조
	장애인복지관 건립	1,155,000	자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508,482	국고보조
	생계급여지원	3,900,000	국고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14,244	국고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940,502	국고보조
	영아 보육료 지원	2,000,000	국고보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80,640	도비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504,066	국고보조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988,060	국고보조
	기초연금 지원	15,913,077	국고보조
노인생활시설 운영	1,357,061	국고보조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경제체육과 (8)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852,000	국고보조
	황계10리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	500,000	자체
	직장체육경기부 운영	1,405,800	자체
	학교체육육성 지원	701,720	자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555,000	자체
	미탄체육공원 조성	1,000,000	도비보조
	용평체육공원 조명탑 및 막구조 설치	600,000	자체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부지매입	600,000	자체
환경위생과 (6)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040,000	국고보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1,044,000	자체
	소각시설위탁 운영비	1,649,524	자체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113,000	국고보조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102,000	국고보조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	883,333	국고보조
산림과 (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714,020	국고보조
	임도사업	749,055	국고보조
	사방댐 사업	1,251,977	국고보조
	조림사업	1,052,949	국고보조
	정책숲가꾸기사업	1,885,357	국고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757,448	국고보조
안전건설과 (18)	기화교(D급) 재가설 공사	1,320,000	자체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500,000	자체
	중부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500,000	국고보조
	황계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465,600	국고보조
	위험도로 구조개선(4개소)	1,000,000	자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3개소)	1,150,000	자체
	소교량 가설사업	500,000	자체
	소규모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500,000	자체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안전건설과	동계올림픽접근도로망 확충사업	2,670,350	자체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사업	3,215,000	국고보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200,000	자체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700,000	자체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3,000,000	국고보조
	홍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600,000	국고보조
	도배수로정비사업	1,350,000	자체
	농산물반출도로정비사업	1,800,000	자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254,000	국고보조
	메밀꽃 신규마을 조성사업	544,000	국고보조
도시주택과 (13)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사업	2,000,000	자체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1,000,000	자체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	600,000	자체
	평창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620,000	국고보조
	미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771,000	국고보조
	방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00,000	국고보조
	봉평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59,000	국고보조
	대관령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0,000	국고보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500,000	자체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	500,000	자체
	주거급여	1,063,900	국고보조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700,000	자체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500,000	도비보조
올림픽추진단(1)	미디어 파사드 설치	800,000	국고보조
올림픽운영과 (2)	효석문화예술촌조성사업	3,968,000	국고보조
	한류 k-컬처(평창스토리) 개최지원	662,000	국고보조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올림픽시설과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중 제작	560,000	자체
	상징도로 및 진·출입 관문경관 조성사업	8,874,000	국고보조
	게이트웨이지구 건물입면 및 간판정비사업	1,930,000	국고보조
	진부도시재생지구 환승역 주변 경관개선사업	2,400,000	국고보조
보건의료원 (2)	평창보건의료원 이전신축	4,459,176	국고보조
	진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649,823	국고보조
농축산과 (9)	거슬갑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156,000	국고보조
	방아다리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890,000	국고보조
	농식품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	1,047,000	국고보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500,000	자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135,000	국고보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999,177	도비보조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	550,000	자체
	평창동계올림픽 한우 공식납품 지원	500,000	자체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	600,000	자체
기술지원과 (5)	조건불리직불금	1,880,850	국고보조
	발농업 직불금	687,001	국고보조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654,000	도비보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원	555,000	국고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4,571,394	국고보조
상하수도사업소 (8)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500,000	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3,200,000	국고보조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1,800,000	국고보조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3,591,000	국고보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500,000	자체
	용평배수지 설치공사	600,000	자체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7,971,666	국고보조
	방림(계촌지역)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21,429	국고보조

IV.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62,6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7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324,0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077백만원(9.49%)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38,5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7백만원(△29.36%)이 감액 편성 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24,0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07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60%인 **2,798백만원**이 증액된 **26,92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가 전년대비 **2,593백만원**이 증액된 **26,26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이 전년대비 **205백만원** 증액된 **65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23%인 **1,247백만원**이 증액된 **11,44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액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33.24% 증액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071백만원**이 증액된 **157,37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2,756백만원**이 증액된 **151,556백만원**을,
특별교부세는 올림픽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 외 2건에 **2,815백만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인 **3,000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00백만원이 증액된 6,0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조금은 전년대비 14,862백만원이 증액된 115,26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중, 국고보조금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11,066백만원이 증액된 93,83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796백만원이 증액된 21,4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3,600백만원이 증액된 7,10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24,0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07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6,906백만원이 증액된 261,047백만원
 -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454백만원이 감액된 14,635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1,625백만원이 증액된 48,41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 국토및지역개발 49,933백만원(15.41%),
 - 사회복지 49,089백만원(15.15%)
 - 농림해양수산 49,016백만원(15.12%)
 - 기타 48,412백만원(14.94%)
 - 문화및관광 45,177백만원(13.94%) 등
 5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7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분야 중 8개 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36.69%), 공공질서및안전(△7.67%), 교육(△7.23%)
 일반공공행정(4.94%), 농림해양수산(△1.90%) 등
 5개 분야는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음.

○ 조직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48,564백만원(14.98%)

주민생활지원과 46,005백만원(14.19%)

안전건설과 34,621백만원(10.68%)

농업기술센터 34,576백만원(10.67%)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시설과(193.58%), 올림픽추진단(157.09%) 의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51,712백만원(46.81%)

경상이전비 88,332백만원(27.26%)

인건비 41,070백만원(12.67%)

물건비 25,213백만원(7.78%)

내부거래 12,008백만원(3.71%)

예비비및기타 3,188백만원(0.98%)

보전재원 2,570백만원(0.79%)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평창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8,5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07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64백만원이 감액된 18,51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9백만원이 감액된 64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5백만원이 증액된 1,033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5백만원이 증액된 630백만원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0백만원이 증액된 633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084백만원이 감액된 16,75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확보가 전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을 보면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여건 변동을 고려한 세입추계 분석을 통하여 전년대비 40억원이 증액된 3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85% 증액된 1,516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3개사업비 확보분 28억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수준인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보조금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102.86%가 증액된 71억원을 편성하였음.
- 총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97%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84%로 전년도 보다 0.25% 높아졌음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1》 보통교부세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현황(최근3년)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최종예산)	2015년(최종예산)	2016년(최종예산)	2017년(당초편성)
보통교부세	166,416	157,506	171,454	151,556
순세계잉여금	12,346	24,767	17,193	7,100

□ 세출예산안을 보면

1) 자체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 재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도 일부 미부담한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해야할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등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2》 자체신규사업 편성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합 계	103개사업	12,518,661	
기획감사실 (3)	정부3.0 시책 홍보비 및 장비구입	25,000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22,000	
	진부비행장 이전 실시설계용역	110,000	
문화관광과 (10)	대화도서관 화장실 자동센서등 설치 및 LED등 교체공사	21,970	
	평창시네마 장애인 승강기 증축공사	100,000	
	계촌마을 클래식 축제장 정비사업	30,000	
	관광자원 홍보비	300,000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사업	70,000	
	땀띠공원 부지매입	1,200,000	
	꿈의대화 캠핑장 유지관리	160,000	
	올림픽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	200,000	
	수상작 제품구매 보증, 포장지 개발	25,000	
	축제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주민생활지원과 (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47,5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26,500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	77,615	
	공립용평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40,000	
	공설묘지 안전시설물(웬스) 설치공사	20,000	
	봉안당 CCTV설치공사	20,000	
	공설묘지 부지내 안내판 설치공사	20,000	
	노인일자리아업 전담인력 지원	39,932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비 및 인건비 지원	80,340	
종합민원과 (3)	지적서고 물품구입	90,000	
	지적재조사 조정금	160,000	
	도로명주소(영문) 안내지도 제작	15,000	
자치행정과 (4)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86,264	
	암호화 장비 교체	106,000	
	행사낭비성 요인분석 및 의전메뉴얼 제작	20,000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비	50,000	
재무과 (4)	본청 옥상 방수공사	200,000	
	고가수조 교체 및 4층 가압펌프 설치	35,000	
	진부면 청사 창고 신축공사	180,000	
	진부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1건	900,000	특별회계
경제체육과 (8)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부지매입	35,000	
	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구축비	40,000	
	봉평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30,000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합숙소 매입	230,000	
	체육회 차량구입	45,000	
	용평체육공원 조명탑 및 막구조 설치	600,000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00	특별회계
	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	150,000	특별회계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환경위생과 (5)	공중화장실 CCTV 구축	20,000	
	음식문화개선사업	20,000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지원	50,000	
	외식업소 농특산품 홍보·판매대 구입	36,0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리모델링	20,000	
산림과 (4)	산불예방 활동지원(이장)	37,800	
	임도조성사업	20,000	
	삼림욕장 시설물 정비 및 보완사업	140,000	
	효석문학의 숲 진입로 부지매입	77,240	
안전건설과 (10)	간평교(D급) 재가설공사	100,000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	500,000	
	국유림 대부허가지 보상	200,000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0,000	
	군도17호선(진조리) 위험구간 정비	100,000	
	농어촌도로(진부202호) 위험구간 정비	150,000	
	농어촌도로(대관령204호) 노폭확장	250,000	
	농어촌도로(봉평201호) 확포장사업	200,000	
	농어촌도로(용평301호) 확포장사업	250,000	
	농업생산기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25,000	
도시주택과 (2)	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사업	60,000	
	법인택시 자율감차 지원	156,000	
올림픽추진단 (9)	올림픽 유산 기록물 제작비	100,000	
	레저스포츠 엑스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35,000	
	올림픽 종합상황실 설치공사	25,000	
	올림픽홍보 유니폼 구입비	50,000	
	평창동계올림픽 프레스킵트작성 용역	30,000	
	월별 릴레이 테마실천 운영비	56,000	
	굿매너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송출비	50,000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거점만들기	60,000	
	굿매너 포토존 조성	50,000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올림픽운영과 (3)	전통민속 공연팀 육성 지원	300,000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300,000	
	올림픽 관련 문화 행사 지원	20,000	
올림픽시설과 (4)	방림마을 경관 개선사업	100,000	
	횡계리 전선지중화 사업	400,000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중 백서발간	30,000	
	공공 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 재생사업	125,000	
보건의료원 (3)	업무용 차량구입	45,000	
	복사기 구입	33,000	
	노쇠예방관리사업 데이터 관리프로그램구입	22,000	
농축산과 (14)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114,000	
	청사 관용차량 구입	28,000	
	농산물 장터 철거	100,000	
	한우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20,000	
	한우개량 농가 시설개선 지원	20,000	
	소규모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	20,000	
	평창동계올림픽 한우 공식 납품 지원	500,000	
	꿀벌 사양 화분반죽기 지원	25,000	
	양계 폐사축처리기 지원	30,000	
	거점 소독시설 부지매입	600,000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지원	24,000	
	양식장 스마트관리 시스템 지원	24,000	
	송어 배합사료 저온저장시설 지원	24,000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발생기 지원	30,000	
기술지원과 (6)	귀농인 정착금 지원	76,800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50,000	
	고랭지채소 안정생산(하우스 운반시설 지원)	36,000	
	시설재배 “고추·피망” 병해충방제시설 지원	30,000	
	신소득 유망작목 재배 시범지원	41,400	
	평창 산채 명품화 안정생산 지원	114,300	
상하수도 사업소(2)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장비창고 신축공사	200,000	
	지방도 456호선(간평~유천) 상수관로 이설	300,000	

2) 행사·축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기준경비에 포함된 행사·축제 예산의 우리군 기준액은 5,479백만원임.
-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사·축제 예산은 5,385백만원으로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특구) 예산이 1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행사·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개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 지원,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3》 행사·축제 예산편성현황(총괄)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5,385,634	5,056,424	329,210	
201-03 행사운영비	2,469,450	1,846,500	622,95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63,984	609,924	△45,94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52,200	2,600,000	△547,800	
401-04 행사관련시설비	300,000	0	300,000	

《표3-1》 순군비로 편성된 행사·축제 현황(2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합계		41개사업	2,521,450	
1	기획감사실(1)	국내교류단체 행사운영비	20,000	
2	문화관광과 (14)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30,000	
3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비	100,000	
4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날 행사운영비	20,000	
5		관광홍보전 참가 및 홍보운영비	30,000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6	문화관광과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	50,000	
7		축제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	
8		관광·축제 아카데미 운영비	20,000	
9		문화예술 전시·공연사업 지원	20,000	
10		대관령음악제 지원	100,000	
11		강원예술제 지원	50,000	
12		노산문화제 지원	200,000	
13		백일홍축제 행사지원	100,000	
14		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	100,000	
15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	200,000	
16		주민생활지원과 (2)	청소년 문화의집 행사운영비	24,000
17	여성회관 강사료		34,000	
18	자치행정과 (5)	주민정보화 및 격차해소 운영비	25,000	
19		굿매너 평창아카데미 운영비	60,000	
20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비	74,250	
21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	25,000	
22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20,000	
23	경제체육과 (7)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운영비	130,000	
24		봉평전통시장 활성화 운영비	30,000	
25		전국학생레슬링대회 지원	130,000	
26		K3리그 홈경기 개최지원	30,000	
27		읍·면 체육대회 지원	40,000	
28		연례대회 개최지원	140,000	
29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	247,000	
30	환경위생과 (2)	음식문화 Contents 운영비	40,000	
31		평창음식문화대축제 운영비	70,000	
32	산림과 (2)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비	36,800	
33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숲해설 운영비	30,000	
34	올림픽추진단 (2)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과제추진	22,400	
35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20,000	
36	올림픽운영과 (3)	드림프로그램 참가	20,000	
37		올림픽 관련 문화행사 지원	20,000	
38		테스트이벤트 관중참여 지원	90,000	
39	농축산과 (2)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 운영비	20,000	
40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30,000	
41	기술지원과(1)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33,000	

3) 지방보조금 사업관련

- 2017년도 지방보조금사업의 우리군 총한도액은 19,638백만원임.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비 보조는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에서
 우리군이 민간이전경비 분야에서 최근3년간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임.
-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4》 자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현황(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13,035,977	13,316,128	△ 280,151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793,013	2,000,500	792,513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84,848	1,054,833	130,015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52,200	2,120,000	△ 567,800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49,427	1,004,100	145,327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91,809	942,015	249,794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164,680	6,194,680	△1,030,000	

《표4-1》 최근3년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민간이전경비	△181	△1,119	△1,485

4)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8,03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70백만원(△47.16%)이 감소하였으며, 사업개수는 32개로 사회복지분야(49.91%)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향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5》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단위:개, 백만원, %)

사 업 별	사업 개수	2017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2	8,034	15,204	△7,170	△47.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	1,866	1,975	△109	△5.54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사업	21	4,518	11,413	△6,895	△60.42
자치단체특화사업	5	1,650	1,815	△165	△9.09

5)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 「지방재정법」 제42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20건임.
-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제도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 《표6》 과 같이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이월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6》 계속비이월예산 집행현황(2016.11.30)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이월액	집행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43,006	18,088	42.06%	
일반회계	20,534	8,870	43.20%	
수질개선특별회계	15,538	6,859	44.1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34	2,359	34.02%	

6)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제출된 2017년 성과계획 총괄은 《표7》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 등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7》 성과계획(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개수	성과지표수				
2017년	18	63	140	155	344,093	323,658	20,434

-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V.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